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6. 10.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
게 포상하는 경우 제7조 「상장」 수여 대상 조항에 포함하였으나
- 포상의 필요성, 평가항목 적정성 여부 및 표창의 남발여부 등
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조항으로 조정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 안 제5조제3항 삭제된 조항에 안 제7조제4항인 「시정주요 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의 조항을 삽입

3. 참고사항

- 도 기획관실2040(‘06.4.3)호의 「200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호”를 안“제5조제3호”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개정안과 같음) 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3(개정안과 같음)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포상조례”를 “구미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